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고,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(4·5급 1명)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표 1 중 총계 “217”을 “22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15”를 “219”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“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”을 삭제하며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0”을 “22”로 하고,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20”을 “22”로 한다. 별표 1의2 중 총계 “217”을 “22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15”를 “219”로 하며, “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”을 삭제하고, 행정사무관 “65”를 “66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19”를 “21”로 하고,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21”을 “2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•		•		
			<u>217</u>		<u>221</u>	+4	
•			•		•		
•			•		•		
일반직	계		<u>215</u>		<u>219</u>	+4	
•			•		•		
•			•		•		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		<u>19</u>		<u>20</u>	+1	
<u>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		<u>1</u>		<u><삭 제></u>	-1	
•			•		•		
•			•		•		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		<u>20</u>		<u>22</u>	+2	
•			•		•		
•			•		•		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		<u>20</u>		<u>22</u>	+2	
•			•		•		
•			•		•		

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217</u>	• <u>221</u>	+4
일반직 계	• • <u>215</u>	• • <u>219</u>	+4
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	• • <u>1</u>	• • <u><삭 제></u>	-1
행정사무관	• <u>65</u>	• <u>66</u>	+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• <u>19</u>	• <u>21</u>	+2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• <u>21</u>	• <u>23</u>	+2
	•	•	
	•	•	